

일본 세관에 의한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반입 단속



FAKE ZERO PROJECT

China Customs Japan Customs Korea Customs

**Customs & Tariff Bureau,
Ministry of Finance, Japan**





6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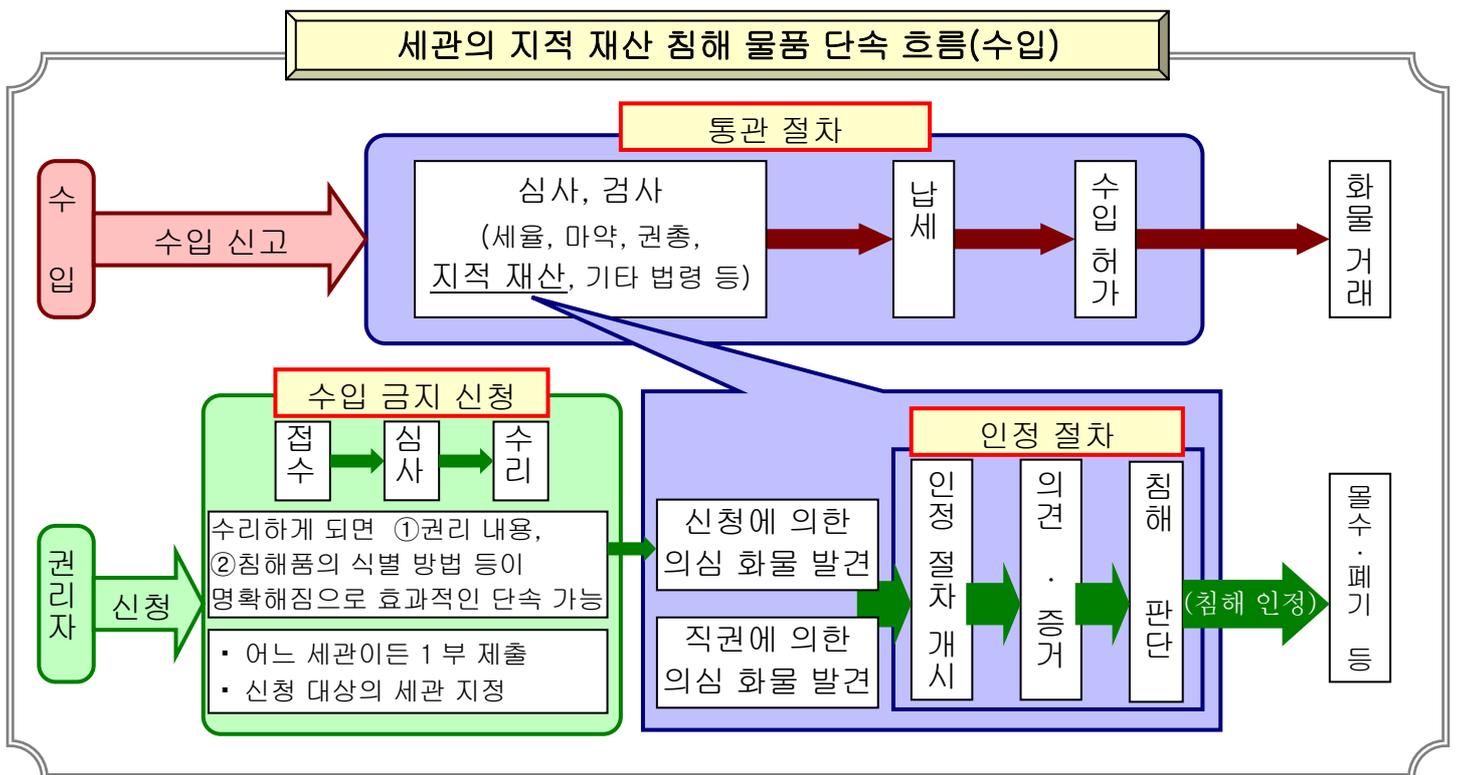
세관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일본 관세법에서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은 마약, 권총 등을 비롯한 ‘수출 및 수입해서는 안되는 화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은 일본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 또는 일본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 중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통과하는 화물 중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권리는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뿐 아니라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및 육성자권과 같이 폭넓게(수입의 경우 회로 배치 이용권도 단속 대상) 적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상품 등의 표시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 타인의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의 표시를 사용한 상품,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 영업 비밀을 침해한 물품 및 기술적 제한 수단을 무효화하는 장치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 경쟁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관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 단속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은 수입을 예로 들자면 하기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수입자로부터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발견했을 시에는, 세관은 그 화물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 절차’를 개시하고, 이 절차에서 권리자나 수입자에게서 제출되는 의견 및 증거를 기초로 인정을 실시합니다. 인정 절차를 실시한 결과, 지적 재산을 침해했다고 세관이 인정한 화물은 수입자 스스로가 폐기하거나 세관이 몰수하는 등, 유통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수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수출입이나 일본을 통과하는 외국 화물 중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을 국내 운송 및 장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관세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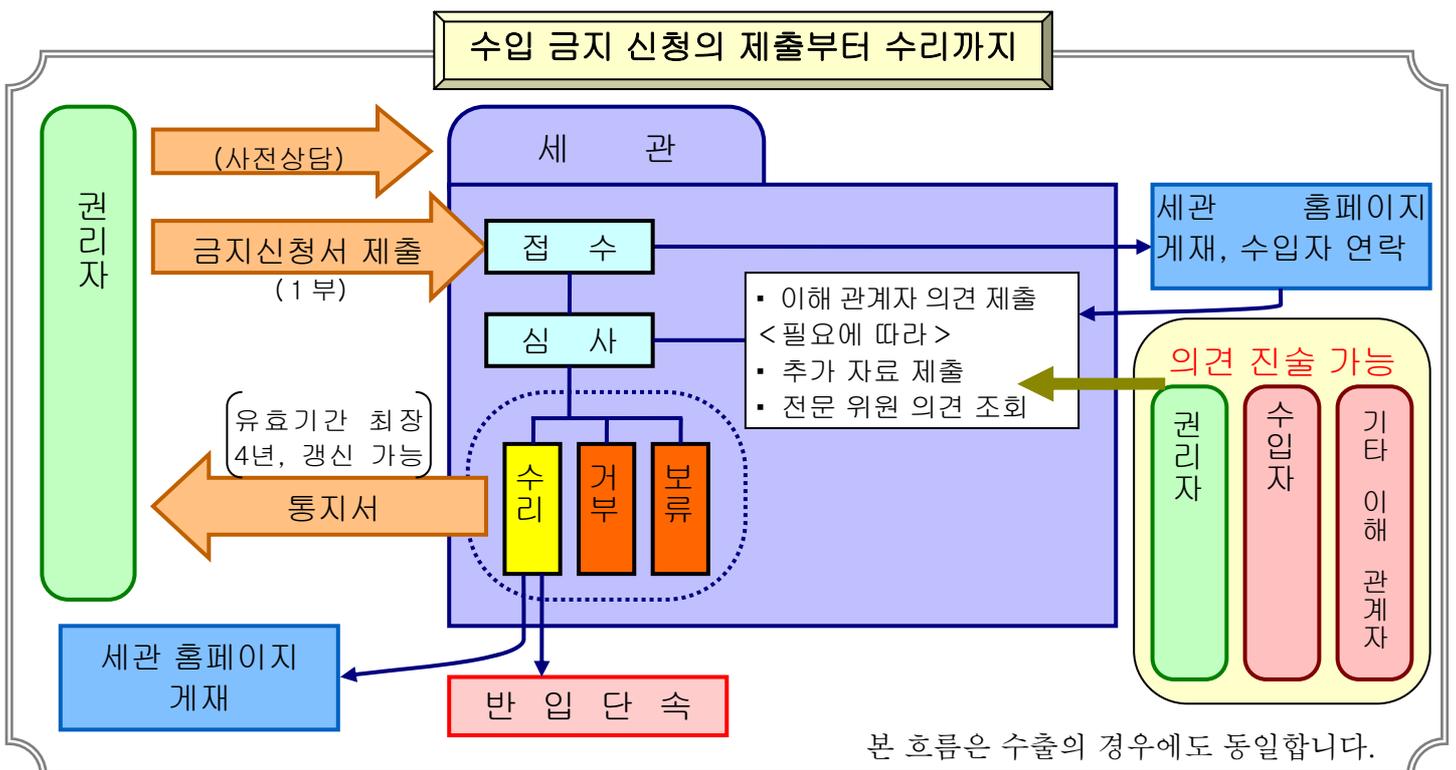
금지 신청 제도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혹은 육성자권의 권리자 또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권을 가지는 자(이하 ‘권리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이 수출 또는 수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인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지 신청 제도’입니다.

금지를 신청하는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 또는 상품 등의 표시 및 상품 형태의 내용, 자신의 권리 또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의 품명과 그 이유 등을 금지신청서에 기재하여 침해의 사실을 소명하는 증거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세관에 수수료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수리 요구 조건에 충족될 경우 이를 수리하고, 그 신청에 근거하여 반입 단속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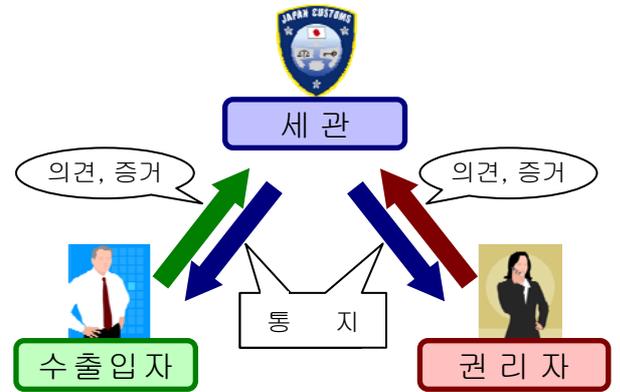
금지신청서의 제출부터 수리하기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은 하기의 그림과 같습니다. 세관은 권리자로부터 금지신청서를 접수하면 ①권리 내용에 근거가 있는지, ②침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지, ③금지 신청 대상의 화물을 세관이 식별할 수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 합니다. 또한 금지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세관 심사와 병행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해 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등의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식 및 경험있는 전문위원에게 그 의견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심사 후 세관은 수리 또는 거부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는 통지서를 통해 권리자에게 전달합니다. 금지신청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유효한 기간 중, 세관 홈페이지에서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혹은 특허청에서 권리자와 이해관계자 등 간에 분쟁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 등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 정 절차 에 대 하 여

‘인정 절차’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세관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발견했을 경우 그 화물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인정하기 위해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인정 절차에서 세관은 대상 화물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권리자 및 수입자(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 이하 동일.) 쌍방으로부터 증거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의견 및 증거에 근거하여 그 화물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판단한 결과는 인정 통지서를 통해 권리자 및 수입자 쌍방에게 통지됩니다.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이라고 인정된 화물은 수입자 스스로가 폐기하는 등의 자발적인 처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이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세관이 발견한 지적 재산 침해 의심 물품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서부터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을 몰수 및 폐기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세관에서 실시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인정 절차에 있어서 세관에 증거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정 절차나 그 후의 몰수 및 폐기에 있어서도 권리자는 세관이나 수입자에게 보관 비용 및 폐기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의심 화물을 세관이 발견하게 되는 단서로서는, 금지 신청을 통해 권리자가 제공하는 정보(진품과 침해품을 분별하는 방법, 예상되는 수출입자 등) 또는 세관 직원 스스로가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권리자의 금지 신청 정보에 의해 의심되는 화물을 발견하여 인정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관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 단속에 있어서 권리자의 금지 신청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금지 신청이 수리된 권리자는 인정 절차시에 대상 화물에 대해 견본 검사(분해, 분석 등)를 할 수 있으며,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접권 및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또는 부정 경쟁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영업 비밀을 침해한 물품 제외)의 수입과 관련된 인정 절차인 경우, 인정 절차도 간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있어서도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지 신청이 수리된 권리자는 관세법에 따라, 해당 신청과 관련된 화물의 인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화물이 수입되지 않아 수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상당액의 담보금 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신청 공탁).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혹은 영업 비밀을 침해한 물품에 관한 금지 신청과 관련된 화물의 인정 절차에서는 일정기간 후에 권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배상을 담보하는 금액을 수입자가 공탁함으로써 인정 절차를 취하하도록 세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통관 해방 제도).

권 리 자 여 러 분 께

세관은 권리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지 신청 제도에서는 권리자로부터 권리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자료,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진품과 침해품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 그 외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세관은 제출해 주신 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 금지 신청이 수리된 권리자는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품과 침해품을 분별할 수 있는 연수 실시의 기회도 있습니다.

세관의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 금지 신청은 제출부터 수리, 기각의 결정까지 통상 약 1개월만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금지 신청 수수료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 부정경쟁방지법(영업 비밀을 침해한 물품 제외)에 있어서 금지 신청의 대상 물품은 인정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수입의 경우).
- 금지 신청서는 전국 9개 세관 중 어느 한 세관의 지적 재산 조사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된 금지 신청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전국의 세관 관청에서 해당 신청에 근거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허권 등의 전문성 높은 분야에서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침해 사안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세관에서는 특허청 등의 관계 부처와의 연계 및 전문위원 제도의 활용을 통해 적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위원 제도】

수출입 금지 신청 심사나 인정 절차에서 권리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세관 단독으로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지적 재산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에게 세관이 의견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위원은 풍부한 견식을 가진 변호사, 변리사, 대학 교수 중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3 명을 선출합니다. 세관은 명백한 사실 오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간소한 인정 절차】

수입 금지 신청이 수리된 경우의 인정 절차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및 의장권,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수입자가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는 의견 및 증거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산 센터(도쿄 세관 총괄 지적 재산 조사관) TEL : + 81-3-3599-6260

- | | |
|--------------------------------|----------------------------------|
| ○하코다테 세관 (TEL:+81-138-40-4255) | ○고베 세관 (TEL:+81-78-333-3156) |
| ○도쿄 세관 (TEL:+81-3-3599-6369) | ○모지 세관 (TEL:+81-50-3530-8366) |
| ○요코하마 세관 (TEL:+81-45-212-6116) | ○나가사키 세관 (TEL:+81-95-828-8664) |
| ○나고야 세관 (TEL:+81-52-654-4116) | ○오кина와 세관 (TEL:+81-98-943-7830) |
| ○오사카 세관 (TEL:+81-6-6576-3318) | |

각 세관, 업무부 지적 재산 조사관

